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2.6.13 (수) 17:40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,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노사민정협의회 설치, 구성 및 기능 조항 신설(안 제2조)

나. 일부 조문의 정비(안 제3조, 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